

## 95. 장애인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

▶ 신규여부 **신규** 계속 ▶ 사업시기 **임기내** 임기후 ▶ 예산투자 예산 **비예산** ▶ 사업주체 **인천시** 국가 민간

### ○ 정책목표

- 장애인 사회적기업\*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 
 장애인 사회적기업 창업(진입)·판로 지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도  
 \*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비율이 30/100 이상이거나 대표자가 장애인인 기업

### ○ 정책개요

- 현 황
  - 인천지역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34.4%\* 수준. 전체 사회적기업(예비포함) 288개 중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14개(4.9%)로 비중이 다소 낮은 편('22.5.기준) \* 전국평균 34.6%
  - 인천지역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총 35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4위 수준\*  
 \*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: 전국 585개소, 인천 35개소(경기 132, 서울 110, 부산 38, 대구·인천 35, 경남 26, 광주 24 順)

#### <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유형 / 한국장애인고용공단 >

- ① 일반형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(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, 법령 상 고용비율·편의 시설 충족,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)을 충족하여 공단이 인증하는 형태, 지원요건에 따라 무상지원금 최대 10억 지원
- ② 사회적경제기업형(창업자금) :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·운영(사업 개시 3년 미만)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**공단의 인증**을 받는 형태, 인증 희망 사업주에 지원요건에 따라 창업비용 1회 최대 5천만원 지원
- ③ 자회사형 :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(모회사)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(장애인 표준사업장)를 설립하여 **공단이 인증하는** 형태, 자회사가 장애인을 고용 한 경우 모회사 고용으로 간주하여 고용부담금 감면
- ④ 컨소시엄형 : 지자체(공공기관, 중소기업, 공단이 3자 협약 체결 및 출자하여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**공단이 인증하는** 형태, 지자체는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, 조례제정, 출자 동의 등 절차 진행,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자체, 공공기관, 기업은 출자 비율만큼 고용부담금 감면

### - 사업개요

#### ① 장애인 사회적기업 창업·판로 지원

- 사업내용 : 장애인 사회적기업 지정 상담·컨설팅 확대, 제품 온·오프라인 입점지원 등
- 사업기간 및 규모 : 2023년(연례 반복) / 비예산(기존 예산 활용)

#### ②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 지원

- 사업내용 : 사회적기업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,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,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치 등 제도 홍보
- 사업기간 및 규모 : 2023년(연례 반복) / 비예산

